제103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결과

- □ **일시·장소**: '24. 6. 17.(월) 14:00 ~ 14:40 /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
- □ 참 석 자
 - O 해양경찰위원회 : 길태기 위원장 등 해양경찰위원 6명 * 전ll 양원 불
 - 해 양 경 찰 청 : 차장, 안건 소관 과장, 기획재정담당관 등 6명
- □ 개최 결과: 심의·의결 7건 (원안의결 5, 수정의결 2)【심의·의결 7건】

연	번	형식	안 건 명	내 용	심의 결과	부서
의 괄 상 정	1	구아 GD	「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」 일부개정안	[공통사항] • 해양경찰 의무경찰 제도 폐지('23.6.4.)에 따라 의무경찰이 포함된 문구 일괄 삭제	원안 의결	
	2	예규	「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」일부개정안	[해양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] • 「청탁금지법」개정에 따른 선물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·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※ 전물범위 (기존) 물품 → (개정) 물품+물품·용역상품권	수정 의결	감찰
	3	훈령	「해양경찰청 감찰규칙」 일부개정안	전물가액 농수산물가공품 (기존) 10만원 이하 → (개정) 15만원 이하 설추석기간: (기존) 20만원 이하 → (개정) 30만원 이하 [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] • 「경찰공무원 징계령」 개정에 따라 징계양정의	원안 의결 원안 의결	
	4	구아 0원	「해양경찰관용심사 위원회 설치 운용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	참작 사유 중 "근무 성적" 삭제 등 <u>수정사항</u> <u>징계양정 기준</u> 의 참작사항 중 ' <u>평소의 행실</u> '을 <u>용어 순화</u> 를 위해 <u>'평상시 근무태도'로 수정</u>		
	5	훈령	「해양경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안	· 법제처 "일몰기한 정비 협조 요청"에 따라 정비 대상에 포함된 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(3년)	원안 의결	

연번	형식	안 건 명	내 용	심의 결과	부서
6	ਰO 한	「해양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칙」 전부개정안	 「스토킹방지법」에 따라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성희롱 예방 규칙과 통합하여 실정에 맞게 보완 ※ (주요내용) △ 직장 내 스토킹 예방 및 사건 처리 지침 도입 △ 익명 신고 처리 기준 마련(사실관계적시→진행, 단순 추측→종결) △ 직장 내 위계 등에 의한 성폭력 발생 시 신고 의무 명시 등 「수정사항] 법제처 권고에 따라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결정하는 위원에 위원장도 포함된다고 명시 	수정 의결	감찰
7	훈령	「자율기구 차세대경비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	• MDA 및 위성센터 구축 등 핵심 업무의 중단 없는 추진을 위한 차세대경비기획단의 존속기한 연장 ※ (기존) 2024년 6월 28일 까지 → (개정) <u>2024년 12월 28일 까지</u>	원안 의결	혁신 행정 법무